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공공시설인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의 이용료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생계 및 의료 수급 대상자와 다자녀가정 세대구성원의 이용료를 감면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납부한 체험료 및 사용료의 개별 반환 사유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객의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대상자 규정(안 제9조)
 -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면제 대상자 수정 및 추가
 - 감면 대상자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추가
- 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사유와 반환 범위 규정 신설(안 제9조의 2)
 - 체험료 전액 및 일부 반환 사유 및 범위 규정
 - 사용료 전액 및 일부 반환 사유 및 범위 규정

3. 개정안 : 불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산림축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 전화 : 054-650-6316, 팩스 : 054-650-6319
- 전자우편 : sunjin5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등록된 자 및 관련 행사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관련 행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관련 행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예천군 관내로 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대구성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관련 행사로 사용할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제10조에 따라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다.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체험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 및 체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예천군이 부담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 <u>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u> <u>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u> <u>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 <u>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관련 행사</u> <u>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관련 행사</u> <u>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관련 행사</u> <u>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u>	<u>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 <u>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u> <u>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u> <u>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u> <u>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u> <u>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u> <u>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등록된 자 및</u>

관련 행사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7.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예천군 관내로 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관련 행사로 사용할 경우

관련 행사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관련 행사로 사용할 경우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관련 행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관련 행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예천군 관내로 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이하 같다)의 세대구성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관련 행사로 사용할 경우

제9조의2(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체험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제10조에 따라 입장을 거부
하는 경우

다.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
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체험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
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
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가. 체험예정일 2일 전부터 4
일 전까지 예약 신청을 취

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체험예정일 1일 전에 예
약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체험예정일 당일 예약 신
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
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
액의 30% 공제 후 반환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
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 및 체험장의 사정으
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
지 못하는 경우

다.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

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
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4

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

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

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

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

의 30% 공제 후 반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

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예천

군이 부담한다.

[별표 1]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제8조 관련)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목공 체험실	대(大)품 (점당)	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3,000원	개인체험료의 30% 할인	체험프로그램 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는 별도 부과
	중(中)품 (점당)	망치 등 간단한 공구를 이용한 작업	2,000원	"	
	소(小) 품 (점당)	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 작업	1,000원	"	
목재놀이체험실		목재놀이도구를 사용한 놀이체험 공간	무 료		
목재전시실		목재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공간			

- 목공체험실 이용시간의 경우 기본 4시간으로 하되 해당 시간 초과 시 추가 금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체험장 단체 이용객 중 인솔자는 무료입장으로 한다.
- 군민, 경로우대자, 장애인,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또는 카드 지참 시 단체할인 금액을 적용한다.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체험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체험 재료비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허한다.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객이 납부한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체험료 반환과 관련된 기존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조례 신설로 인한 삭제(제7조 삭제)

3. 개정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산림축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 전화 : 054-650-6316, 팩스 : 054-650-6319
- 전자우편 : sunjin5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조(체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u> <u>1.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u> <u>2. 체험료를 납부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u>	<u><삭 제></u>